

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

2018. 10. 17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센터는 섬유화질환 제어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섬유화질환 제어에 관한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2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3.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엄 개최
4.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5.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
6. 대학원생, 교수,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 교육
7. 연구연보 발간, 홈페이지 연구 관련 정보 구축
8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, 부소장) ①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
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조직) ①연구센터에 제1그룹, 제2그룹, 제3그룹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제1그룹은 신규섬유화 질환 치료타겟 발굴 및 제어물질 스크리닝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
③제2그룹은 섬유화질환 핵심 단백질-단백질 결합의 분자적 기전 규명, 제어물질 탐색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
④제3그룹은 섬유화질환 조절기전 및 네트워크 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행정실은 기획, 학술, 재정, 홍보, 국제산학협력, 서무 회계 및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5조(연구위원 등) ①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

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

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직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직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직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연구원 등) ①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직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7조(연구교수) 연구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행정인력) ①연구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직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회) 연구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11조(평가위원회) ①연구센터는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, 중요사업성과의 분석, 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평가위원회는 연구센터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3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센터의 경비는 연구센터 기금, 한국연구재단 지원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연구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부 칙(2018. 10. 17. 제정)

이 규정은 2018. 11. 1. 부터 시행한다.